산학AI융합지원센터운영규정 10-1-10

규정번호 10-1-10
제정일자 2014.6.9
최근개정 2026.2.6
개정차수 9차 개정
관리부서 산학AI융합지원센터

[규정명칭 변경 2026.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산업 및 AI 융합 분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학AI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2.26., 2026.2.6.)

제2조(위치) 센터는 명지전문대학 내에 둔다

제3조(사업) 센터는 현장밀착형 통합전공 교육과정, 사회맞춤형학과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 및 취업연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02.26., 2018.12.10., 2019.02.25., 2019.07.30., 2020.01.14., 2020.02.17., 2021.08.18., 2026.2.6.)

1. AI 기반 수요 대응을 위한 산학협력 체계 강화(신설 2026.2.6.)
2. 현장지도 및 지원을 통한 대학 내 AI 융합 허브 역할 수행(개정 2018.02.26., 2026.2.6.)
3. 산업체, 학생, 지도교수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발(개정 2018.02.26., 2026.2.6.)
4. 유기적인 산학협력체제 강화로 우수인력 양성(개정 2018.02.26., 2026.2.6.)
5. 산업체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개정 2018.02.26., 2026.2.6.)
6. 기타 목적 달성에 관련된 사업(개정 2026.2.6.

제4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개정 2018.02.26., 2018.12.10.)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02.26.)

제5조(조직) 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2.26.)

① (항삭제 2018.02.26.)

② (항삭제 2018.02.26.)

③ (항삭제 2018.02.26.)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개정 2018.02.26.)

③ 위원회는 산학중점교수를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

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02.26. 2018.12.10)

④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2.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 기본계획(개정 2024.7.24.)
2. 현장밀착형 통합전공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편성 및 운영(개정 2018.02.26., 2018.12.10.,2024.7.24)
3. 규정의 제·개정
4. 기타 현장밀착형 통합전공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8.02.26.,2024.7.24)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7.24.)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센터의 전담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02.26.)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재정은 우리대학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10.)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6월 0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5항제1호~제4호, 제6조제6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